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48

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 박성민·구자근·김성원

김미애 · 김위상 · 박상웅

이헌승 · 강민국 · 안상훈

박정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, 예외적으로 연접한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임대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

그런데 산업단지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규정에 따라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·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,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함으 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3).

법률 제 호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3의 제목 "(연접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)"를 "(산업용지임대의 특례)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(관리지침으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"를 "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하려는 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(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을 설치하려는 때에 해당 산업용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려는 경우
- 2.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「지방자

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용지를 해당 산업단지에 공장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(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)에게 그 건설공 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, 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주차 등을 목적 으로 임대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38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임대하려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38조의3(산업용지 임대의 특례)

제38조의3(연접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)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<u>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 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 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 (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. <신 설></u>

1.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
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
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
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
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
설 또는 부대시설(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
경우에 한정한다)을 설치하려는 때에 해당 산업용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려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는 경우

2.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
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
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
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
내 산업용지를 해당 산업단지
에 공장등을 신설 또는 증설
하려는 자(건설공사를 하려는
자를 포함한다)에게 그 건설
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,
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주차
등을 목적으로 임대하려는 경
우로서 관리권자가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경우
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를 같은 법제38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임대하려는 경우